

중앙정부 및 국회, 주요 언론 복지정책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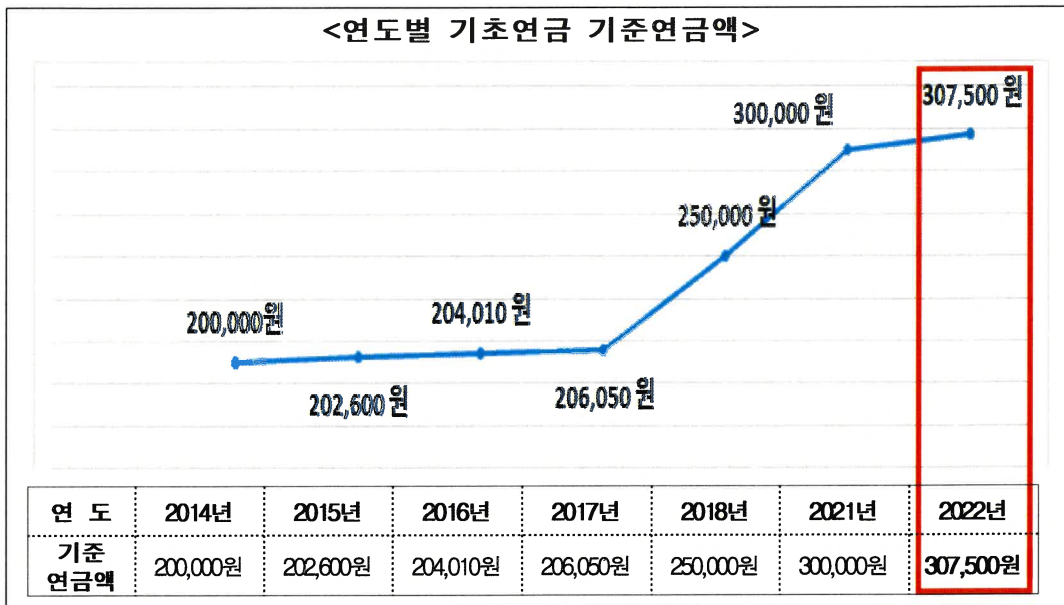
01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,500원 지급

▣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(2.5%)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

- ☞(지급대상)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%를 대상으로 지급
- ☞(지급시기) 1월 급여(1월 25일 지급)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 지급
- ☞(선정기준액)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%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

연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단독가구	131만원	137만원	148만원	169만원	180만원
부부가구	209.6만원	219.2만원	236.8만원	270.4만원	288만원

- ☞(기준연금액) 단독가구 월 최대 307,500원, 부부가구 월 최대 492,000원



- ☞(신청방법)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,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

0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.5% 인상

- ☞(신청대상)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% 수준 이하
- ☞(지원급여)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

구분	18~64세			65세 이상		
	기초급여	부가급여	합계	기초급여	부가급여	합계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재가)	30.75만원	8만원	38.75만원	기초연금으로 전환	38.75만원	38.75만원
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30.75만원	7만원	37.75만원		7만원	7만원
차상위 초과	30.75만원	2만원	32.75만원		4만원	4만원

- ☞(선정기준액)

연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단독가구	121만원	122만원	122만원	122만원	122만원
부부가구	193.6만원	195.2만원	195.2만원	195.2만원	195.2만원

- ☞(신청방법)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, 복지로(<http://www.bokjiro.go.kr>)



01 영유아 지원 사업 신설·확대시행 안내

▣ 첫만남이용권 (신설)

- ☞(지급대상) '22.1.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
- ☞(지원내용)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(국민행복카드)
 - ※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(아동발달지원계좌) 지급
- ☞(사용기간) 아동출생일(주민등록일)로부터 1년
- ☞(신청방법)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또는 정부24(www.gov.kr)
 - ※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(온라인에서도 가능)

▣ 영아수당 (신설)

- ☞(지급대상) 만0~1세 아동('22년생부터)
- ☞(지원내용) 현금(가정양육시)또는 바우처(어린이집,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)
 - ※현금, 보육료,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
동시 지원 불가(서비스 간 변경 가능)
- ☞(지원시기) 0~23개월/ 수급서비스 변경시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
- ☞(신청방법)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또는 정부24(www.gov.kr)
 - ※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(온라인에서도 가능)
 - ※온라인 신청은 '22.1.5일부터 신청 가능

▣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(확대)

- ☞(지원대상) 자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, 성남시에 주민등록된 가정(2022.1.1. 기준)
 - ※엄마 또는 아빠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라는 '기존 지원 기준 폐지'
- ☞(지원금액) 정부 지원 국민행복카드 100만원(쌍둥이140만원)을 초과한 경우
90% 범위, 최대 20만원 지급
- ☞(신청서류) 진료비 영수증, 등·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, 의사진단서(고위험 임신부 해당)
 - ※관할 보건소 미등록 임신부의 경우, 산모수첩 지참 또는 임신 확인서
- ☞(신청기간)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(출산일 제외) 출생 신고한 지역 보건소에 신청
- ☞(문의처) 수정구보건소 ☎729-3850, 중원구보건소 ☎729-3906, 분당구보건소 ☎729-4008

▣ 아동수당 지원연령 (확대)

- ☞(아동수당)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,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
아동수당 10만원+아동수당플러스 2만원(매월 12만원 지급)
- ☞(연령확대) 만7세 미만 아동 → 만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('22. 1월~)
 - ※ 22.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(14. 2. 1이후 출생아)
 - ※ 14.2.1.~15.3.31. 출생 아동은 22.4월에 22.1~3월분 소급지급
- ☞(신청방법)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또는 정부24(www.gov.kr)
 - ※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,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

02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

▣ 한 번 신청하고 계속 지원받으세요!

- ☞(지원대상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에
해당되는 만9세~만24세 여성 청소년
 - * 1998.1.1.~2013.12.31.출생 청소년(2022년 기준)
- ☞(지원기간)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구매권 지급(최대 16년)
- ☞(지원내용) 연 최대 144,000원(월12,000원) 지원, 국민행복카드로 구매
- ☞(신청기간) 2022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
 - ※ 만19~24세(1998.1.1.~ 2003.12.31.출생) 여성청소년은 '22.5.1.부터 신청 가능
 - ※ 2021년에 구매권을 지원받았던 19세(2003년생)는 별도의 신청 없이 5월에 구매권
생성 예정(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)
- ☞(신청방법)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·모바일 앱 신청



▣ 2022년 성남시 1인가구 동아리 지원사업 신청

☎(신청기간) 2022. 1. 12.(수) ~ 2. 9.(수) 18시 까지 (주말,공휴일제외)

☎(접수방법) 방문 및 이메일 접수 (우편접수 불가)

☎(접수처)

-방문: 성남시청 서관 6층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

-이메일: rosemind@korea.kr

☎(신청자격)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인 가구들의 모임(공고일 기준)

-만 19세 이상 4인~8인으로 구성된 1인가구 모임

-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

※ 신청 제외 대상

-특정 기관의 영리 목적과 정치 및 종교활동을 위한 동아리

-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, 단체, 직장 등에 지원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는 동아리

☎(지원내용) 월 1인당 3만원 이내, 최대 7회 지급

-매월 사진 등 활동보고서 제출

-동아리 사업설명회(OT) 및 결과발표회 필수 참석

-최소 월 1회이상, 매회 정원 60% 이상 참여

☎(문의처) 성남시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☎031-729-8513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복지e음> 성남시 1인가구 지원> 1인가구 커뮤니티의 공고문 확인

▣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요, 중·고생 및 대학생(학습도우미) 모집

☎(사업개요)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취약계층 중·고등학생의 교과수업 지원을 위해 성남시가 동성의 대학생 선생님을 1:1 매칭하여 주 2회 하루 2시간씩 공부를 도와주는 사업

☎(모집대상) 학생 80명, 대학생(학습도우미) 80명

-중·고생: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 한부모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자녀, 학교 밖 청소년

-대학생(학습도우미):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가능

▶ 수 당: 시간당 2만원씩 월32만~40만원

▶ 신 청: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

▶ 필요서류: 지원신청서,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

☎(문의처)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☎031-729-3035

▣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신청

☎(신청기간) 2022. 1. 3.(월) ~ 12. 30.(금)

☎(신청대상)

-만13세~만18세(2004.1.1.부터 2009.12.31.까지 출생자)

-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

☎(지원내용) 월별 5만원(분기별 최대 15만원 지급)

-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지급(출금불가)

-교육, 자기개발, 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가능

-기초수급 청소년은 거주지 동에 별도 문의(수급비 중지 또는 감소 여부 확인)

☎(신청방법)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
-제출서류: 정원외관리증명서, 재적증명서, 미진학증명서 등

-성남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상담 실시

☎(문의처)

-성남시청 교육청소년과 ☎031-729-3044 / 성남시청 콜센터 ☎1577-3100

-성남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☎031-729-9171~7

